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	**보도자료**	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2011년 9월 22일(목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자료문의 : 윤종욱 불공정무역조사팀장(02-2110-5581), 조근상 사무관(4965), 장인선 사무관(5585)		

무역위, 『레이저프린터 감광드럼 특허권』 침해 혐의업체에 무혐의 판정

- 명품 안경테·선글라스 원산지표시 위반 수입업체에 과징금·시정조치 -

□ 무역위원회(위원장: 현정택)는 '11.9.21(수) 제29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,

① (주)캐논이 자사 『레이저 프린터용 감광드럼 특허권』을 침해한 혐의로 국내 감광드럼 제조업체 5개업체를 대상으로 신청한 『불공정무역행위 조사건』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리고

② 원산지표시위반 명품 안경테 및 선글라스를 수입·판매한 1개 업체에는 388천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물품에 대한 수입 및 판매중지 명령을 결정하였음

1 『레이저프린터 감광드럼 특허권』을 침해한 5개 혐의업체에 무혐의 판정

□ 무역위원회는 일본 프린터 제조업체인 (주)캐논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감광드럼을 제조하여 수출한 혐의로 국내업체를 대상으로 신청한 불공정무역행위조사건에 대해서 무혐의로 최종 판정함

○ (주)캐논은 지난 '10.5월, 감광드럼의 삼각기어 제조방식 관련 자사 특허권을 침해한 혐의로, 국내 5개 업체가 생산하는 감광드럼의 제조·수출중지를 요청하며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함

○ 이에대해 국내 피신청기업들은 (주)캐논의 특허권은 특허요건이 결여되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,

- 그동안 무역위원회는 당사자를 상대로 현지조사, 기술설명회 및 전문가를 통한 특허권 침해여부에 대한 감정 등을 실시하였음

○ 이날 무역위원회는 특허청구범위에 무효 가능성이 있는 (주)캐논의 특허권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신청인의 해당물품 제조 및 수출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함

□ 한편, 감광드럼은 레이지 프린터에 장착되는 토너 카트리지의 핵심부품으로,

○ 전기작용에 의해 드럼이 감광을 일으키게 되면, 이 감광된 부분에 토너가 부착된 후, 다시 토너를 종이위에 옮기고 열을 가하여 종이 위에 고착시키는 기능을 담당함

2 『안경테 및 선글라스 원산지 표시위반 수입업체』에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

□ 한편, 무역위원회는 지난 4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한 2개 무역업체에 대한 안경테 및 선글라스의 원산지표시 위반 불공정무역행위 혐의에 대해 판정하였음

○ 최근 5년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명품 안경테 및 선글라스를 (Celine, Givenchy, Police 등 6개 브랜드)를 이탈리아로부터 수입하여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A업체에는

- 위반물품의 수입신고금액의 10%에 해당하는 **388천원의 과징금을 부과**하고,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**수입 및 판매중지를 명령함**

○ **중국산 선글라스**에 **원산지를 허위로 표시**하여 수입한 혐의가 **확인된 B업체**에 대해서는,

- **국산 선글라스를 이탈리아산으로 허위표시하여 수출한 혐의를 추가 조사**하기 위해 **조사기간을 2개월 연장**하기로 **의결함**

□ **무역위원회**는 **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이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판매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**하기 위해 이에 대한 **수입 모니터링을 강화**하고 있으며

○ 의류산업협회, 시계산업협동조합, 온라인쇼핑협회 등에 설치된 **"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"의 조사활동을 활성화시킬 계획임**

*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(총9개) : 의류산업협회, 시계산업협동조합, 전자산업진흥회, 기계산업진흥회, 안경사협회, 광학공업협동조합, 자동차공업협동조합, 산업용재협회, 온라인쇼핑협회

붙임1 『레이저프린터 감광드럼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』 개요
붙임2 『안경테·선글라스 원산지표시위반 수출입 불공정무역행위 조사』 개요
붙임3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제도

<붙임1>

『레이저프린터 감광드럼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』 개요

□ 조사 개요

○ 신청인 : (주)캐논
○ 피신청인 : 국내 5개 기업(OPC 감광드럼의 제조·판매업)
○ 조사대상물품 : 레이저 프린터 감광드럼
○ 혐의내용 :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감광드럼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제조하여 수출한 혐의

* **감광드럼**은 레이저 프린터용 카트리지의 핵심 구성 부품으로, 전하를 받은 드럼이 감광을 일으키게 되고, 이 감광된 부분에 토너가 전착후 토너를 종이위에 인쇄하는 역할
* **신청인의 특허**는 감광드럼의 삼각기어 제조방식과 관련

□ 조사 경과

○ '10.5.17.~5.25 조사신청
○ '10.6.1. 조사개시결정
○ '10.6. ~ '11.9 당사자들에 대한 서면조사
○ '10.11. 특허무효 및 침해에 대한 전문가(변리사) 감정
○ '10.11.~'11.1 현지조사
○ '10.12. 기술설명회
○ '11.9.21. 무역위원회 의결(제294차 무역위)

□ 쟁점 사항

○ 5개 피신청인들 중 4개 업체는 신청인 특허권의 무효를 주장

- 무효사유가 명백한 특허권에 근거한 특허권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

○ 1개 업체는 조사대상물품의 제조 및 수출 사실 혐의 부인

□ 최종판정 결과

○ 신청인의 특허는 특허청구범위에 무효가능성이 있으며,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에 근거한 특허권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신청인의 해당물품 제조 및 수출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음

<붙임2>

『안경테 · 선글라스 원산지표시위반 수출입 불공정무역행위 조사』 개요

□ 조사 개요

○ **피조사인** : 2개 무역업체

○ **조사대상물품** : 안경테 및 선글라스

* 안 경 테(HS 9003) : 안경·고글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의 테와 장착구 및 이들의 부분품
* 선글라스(HS 9004) : 시력교정용·보호용 또는 기타용의 안경·고글과 이와 유사한 물품

○ **조사범위** : 원산지표시위반 불공정무역행위

○ **조사대상기간** : 2006. 4.12.~2011. 4.11.(조사개시 결정일: 2011. 4.12)

□ 조사 결과

○ **(A업체)** '06. 5~'11. 2월까지 명품 안경테·선글라스 3,022개를 이탈리아로부터 수입한 사실이 있으며, 이 중 120개(Celine, Escada, Furla, Givenchy, Hugo Boss, Police 등 6개 브랜드)에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음

○ **(B업체)** '06. 4~'10.12월까지 선글라스를 663개 수입하고 5,100개를 수출한 사실이 있으며, 이 중 수입 선글라스 662개의 원산지 허위표시(중국산을 대만산으로 표시)를 확인함

□ 판정 결과

○ **(A업체)** 해당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수입신고금액의 10/100에 해당하는 **388,620원의 과징금을 부과**하고, "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수입·판매 중지 및 재고물량 반송"의 **시정조치를 명함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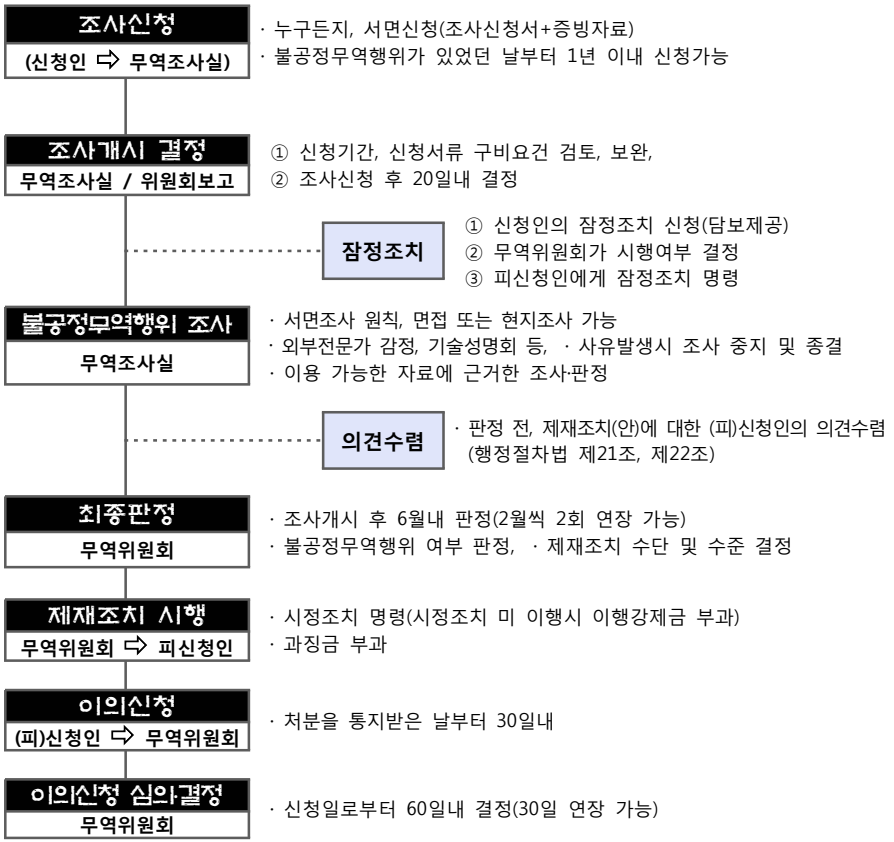
○ **(B업체) 수출된 선글라스의 원산지 허위표시 혐의 추가조사**를 위해 **판정시한**을 당초 2011.10.11.에서 **2011.12.11.로 연장**

<붙임3>

『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제도』

□ **(개념)** 지재권 침해 및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수출입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**과징금, 시정조치명령 등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공정무역질서 확립**

□ (절차)



□ **(관련 법규)** 「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」

제4조 (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)

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(이하 "불공정무역행위"라 한다)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대한민국의 법령이나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**특허권**·실용신안권·디자인권·상표권·저작권·저작인접권·프로그램저작권·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이나 지리적 표시 또는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물품등(이하 "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"이라 한다)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
 가.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 또는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수입된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
 나.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행위
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
 가.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한 물품등
 나.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물품등
 다.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

제10조 (시정조치)

① 무역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하면 해당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1. 해당 물품등의 수출·수입·판매·제조행위의 중지
2. 해당 물품등의 반입배제 또는 폐기처분
3. 정정광고
4. 법 위반으로 무역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
5. 그 밖에 불공정무역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